

3월 주정차 위반 사전적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내지 제34조에 의해 단속되어 같은 법 제160조제3항 규정에 의해 처분되어 주정차위반 사전적발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수취인부재, 수취인 미거주,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. 3. 2.

거 제 시 장



1. 공시송달 공고기간: 2020. 3. 2. ~ 2020. 3. 31. (29일간)
2.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

공 고 명	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적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(2020. 2. 1. ~ 2020. 2. 29.까지의 반송분)
대 상 자	27허**17 외 640건
처분의 원인	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부과
법 적 근 거	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, 같은 법 제160조제3항 /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등
문 의 처	거제시청 교통행정과 (☎055-639-4547)

3. 유의사항

상기 공고대상자는 위 공고기간 내 거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(사전 통지서, 부과분, 독촉분, 압류통지서 등)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, 전국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%의 가산금을 징수하며,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.2%의 증가산금이 부과됩니다.(최고60개월) 그 외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,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4.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: 붙임 참조. 끝.